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mykwon12@korea.kr

2018년 7월 30일

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Inc.(이하 "ISDA")<sup>1</sup>와 Asia Securities Industry & Financial Markets Association("ASIFMA"<sup>2</sup>, 이하 ISDA 와 함께 "저희")은 금융위원회(이하 "귀 위원회")가 2018년 6월 18일 공고한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가지게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이 의견서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률안에서 사용된 정의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이 의견서를 준비함에 있어, 저희 회원들은 의견 합치를 보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이 의견서에 포함된 특정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 회원의 각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의견서는 법률안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저희 회원들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며, 개별 회원 독자적으로 귀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귀 위원회가 금융거래지표에 대한 규율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이는 금융거래지표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2013년 7월 국제증권감독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Securities Commissions, 이하 "IOSCO")에 의해 발표된 금융거래지표 관리원칙(Principles for Financial Benchmarks, 이하 "IOSCO 원칙")을 도입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귀 위원회가 본 법률안을 확정하고, 금융거래지표에 관한 하위 법령과 지침을 제정하는 과정에 논의를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의견서는 법률안 조문 순서대로 정리되었습니다.

---

<sup>1</sup> ISDA는 1985년부터 국제파생상품시장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오늘날 ISDA는 68개국에 걸쳐 900개 이상의 기관을 회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일반기업, 자산운용회사, 정부 및 국제기구, 보험사, 정유 및 원자재 회사, 국제적 및 지역적 은행 등 파생상품시장의 다양한 참가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원은 시장참가자뿐만 아니라 거래소, 중개업자, 청산소 및 거래정보저장소 등 파생상품시장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관들도 포함하며, 법무법인, 회계법인 및 기타 서비스 제공자들도 포함합니다. ISDA 및 그 활동에 관한 정보는 저희 단체의 홈페이지 ([www.isda.org](http://www.isda.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트위터 계정 @ISDA

<sup>2</sup> ASIFMA는 은행, 자산운용회사, 법무법인 및 서비스 제공자와 시장 인프라, buy/sell-side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대표 금융기관들로 구성된 80개 이상의 회원을 가진 독립적이고 지역적인 업계 협회입니다. 또한, ASIFMA는 미국에서는 SIFMA, 유럽에서는 AFME 등 GFMA 연대를 통해 국제 모범준칙과 기준에 관한 식견을 지역의 이익을 위해 제공합니다.

## 제 2 조 (정의)

저희는 법률안 제 2 조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확히 정의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 제 2 조 제 6 호 “사용기관”과 관련하여,
  - 제 2 조 제 1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금융거래지표를 사용하는 “사용기관”이란 제 2 조 제 1 호 가목의 “금융회사등”으로서 동조 제 7 호의 정의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38 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등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만을 의미할 것;
  - 제 2 조 제 1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금융거래지표를 사용하는 “사용기관”이란 제 2 조 제 1 호 가목의 금융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금융회사등”만을 의미하고, 금융거래 및 금융상품을 증개한 금융회사는 포함하지 않을 것;
- “금융상품”의 정의 (현재 미정);
- “금융거래”의 정의 (현재 미정);
- “금융계약”의 정의 (현재 미정).

저희는 또한 “사용기관”의 정의를 “제 1 호(금융거래지표)에 해당하는 용도로 금융거래지표를 사용하는 기관”이라고 함으로써 금융거래지표의 정의와 연계하는 대신, 독립적인 정의를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 제 3 조 (적용범위)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역외적용**

저희는 명확성을 위해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central counterparty, 이하 “CCP”)가 CCP 의 위험관리와 결제를 위해 제공하는 기준가격 또는 결제금액을 명시적으로 법률안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위와 같은 기준가격은 유럽 벤치마크법 하에서는 “benchmark”(이하 “기준지표”)로 해석되지 않으며, 해당 법의 적용이 면제되고 있습니다<sup>3</sup>.

또한, 귀 위원회에서 제 3 조 제 2 항이 적용될 것으로 상정되는 경우를 명확히 해 주시길 제안 드립니다.

<sup>3</sup> Regulation (EU) 2016/101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16 on indices used as benchmarks in financial instruments and financial contracts or to measure the performance of investment funds and amending Directives 2008/48/EC and 2014/17/EU and Regulation (EU) No 596/2014 (이하 “유럽 벤치마크법”) 전문(Recital) 제 19 항과 제 2(2)(c)조를 참조해 주십시오.

#### 제 4 조 (중요지표 지정 및 해제)

- **중요지표의 지정**

저희는 다음과 같은 금융거래지표가 법률안 제 4 조에 규정된 중요지표로 지정될 것을 요청드립니다:

- (1) 서울외국환중개(주)에서 산출하는 원/달러 매매기준율,
- (2) 금융투자협회에서 산출하는 91일 양도성정기예금증서(CD) 최종호가수익률,
- (3) 은행연합회에서 산출하는 COFIX,
- (4) 한국거래소에서 산출하는 KOSPI 200,
- (5) KIS 채권평가에서 산출하는 한경-KIS-Reuters 채권지수.

위 금융거래지표들은 유럽 내 많은 거래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표들이 법률안의 중요지표로 지정될 경우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한국 금융거래지표 감독체계에 대한 동등성 인정 결정에 의해 2019년 12월 31일 이후에도 해당 지표들이 유럽 내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유럽 벤치마크법의 영향에 따라 저희는 귀 위원회가 중요지표를 지정하기 전에 지정을 요할 금융거래지표들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한편, 중요지표 지정에 의해 중요지표 사용기관에게는 법률안 제 8 조와 같이 운영 시스템 등을 구비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와 같은 의무 발생 및 내부 시스템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의 필요에 따라 저희는 중요지표 사용기관에게도 충분한 사전예고기간이 (예를 들어, 최소한 6개월) 주어지고, 법률안 제 4 조 제 4 항의 중요지표 지정에 앞서 귀 위원회에서 일반의 의견수렴을 거칠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것이 어려울 경우 중요지표 사용기관에게도 법률안 부칙 제 2 조와 같은 경과조치가 인정될 것을 요청드립니다.

#### 제 5 조 (중요지표 산출기관의 등록)

- **중요지표 산출기관의 중요지표 설명서와 산출업무규정**

중요지표 사용기관은 법률안 제 8 조 제 1 항에 의해 법률안 제 5 조 제 2 항 제 1 호의 중요지표 설명서를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요지표 설명서가 중요지표 사용기관 및 그 거래 상대방이 알아야 할 중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안에서

중요지표 설명서가 포함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안 제 5 조 제 7 항이 그 세부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sup>4</sup>.

저희는 또한 귀 위원회가 법률안 제 5 조 제 7 항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산출업무규정의 세부적인 사항을 제정할 경우 IOSCO 원칙을 고려하고 준수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 **중요지표 산출기관에 적용되는 규정**

법률안에 따르면 규제장치가 있는 시장의 시장정보에 전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기초하는 기준지표도 금융거래지표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금융거래지표는 그 산출에 있어 제출기관의 어떠한 형태의 정보 제출도 요하지 않으므로, 법률안 제 5 조 제 4 항의 중요지표 산출기관과 중요지표 제출기관 간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여야 할 의무 조항은 적용이 배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sup>5</sup>. 또한, 법률안 제 5 조 제 2 항 제 2 호의 중요지표 산출기관이 ‘중요지표 제출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산출업무규정을 제정할 의무도 적용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지표 산출기관에게 위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기초자료의 기반이 되는 시장은 이미 시장참가자에 대한 행위준칙과 시세조종금지 규정 등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므로, 규제의 공백이 발생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sup>6</sup>.

한편, 법률안 제 5 조 제 3 항은 귀 위원회가 산출업무규정에 관한 사항을 완화하여 적용하거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귀 위원회가 위와 같이 규제장치가 있는 시장의 시장정보에 전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기초하여 산출되는 금융거래지표를 제 5 조 제 3 항에 해당하는 경우 중의 하나로 명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 제 5 조 제 2 항 제 2 호의 산출업무규정을 제정할 의무 및 제 5 조 제 4 항의 계약체결·유지의무의 적용으로부터 제외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sup>4</sup> 유럽 벤치마크법 제 27 조와 그 하위규정 draft regulatory technical standards specifying further the contents of, and cases where updates are required to, the benchmark statement to be published by the administrator of a benchmark adopt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on 13 July 2018 (<http://ec.europa.eu/transparency/regdoc/rep/3/2018/EN/C-2018-4427-F1-EN-MAIN-PART-1.PDF>)을 참조해 주십시오.

<sup>5</sup> 유럽 벤치마크법 제 17 조를 참조해 주십시오.

<sup>6</sup> 예를 들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76 조, 제 178 조, 제 178 조의 2 및 외국환거래법 제 10 조가 있습니다.

## 제 6 조 (산출업무 및 제출업무의 중지·중단 등)

- 제출업무의 중지, 중단 시 조치

저희는 제 6 조 제 3 항에 따른 조치가 기존의 중요지표 제출기관에 대해서만 적용될 것을 건의 드립니다. 즉, 귀 위원회가 기존의 중요지표 제출기관에게만 계속하여 중요지표 제출업무를 수행할 명령을 할 수 있고, 그 외 기존 중요지표 제출기관이 아닌 기관에 대해서는 제출업무를 강제하지 않도록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호주의 감독체계가 채택한 방법입니다<sup>7</sup>.

한편, 유럽 벤치마크법에 따르면 감독기관은 일정한 경우, 예를 들어 해당 기준지표의 대표성이 저해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고 기초자료 제공 기간에 제한을 두는 것을 전제로, 기존의 제출기관이 아닌 피감독기관(supervised entity)에 대해 기초자료를 제공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sup>8</sup>. 또한, 위와 같은 제출의무는 해당 기준지표가 측정하고자 하는 시장에 대한 해당 기관의 실제적·잠재적 참가 규모를 고려한 제한된 범위에서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sup>9</sup>. 싱가포르 기준지표 감독체계에서도 위와 유사하게,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기준지표 제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 시 일정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sup>10</sup>. 저희는 유럽 또는 싱가포르 감독체계와 같이 귀 위원회가 법률안 제 6 조 제 3 항에서 특정 금융회사등에 대해 제출업무를 강제할 수 있는 기준과 요건을 특정하거나, 대통령령에서 이를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또한, 금융회사등이 내부적 통제절차, 승인, 제출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등의 내부적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기존의 제출기관이 아닌 금융회사등에 대해서는 제출업무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sup>7</sup> ASIC Financial Benchmark (Compelled) Rules 2018 Chapter 3 하의 제출의무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F2018L00723/Html/Text#\\_Toc512326228](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F2018L00723/Html/Text#_Toc512326228))와 ASIC Financial Benchmark (Administration) Rules 2018 Part 1.2.1 하의 “Contributors”의 정의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F2018L00728>)를 참조해 주십시오.

<sup>8</sup> 유럽 벤치마크법 제 23(6)조를 참조해 주십시오.

<sup>9</sup> 유럽 벤치마크법 제 23(7)조를 참조해 주십시오.

<sup>10</sup> Securities and Futures (Amendment) Act 2017 section 47 에 의해 개정된 Securities and Futures Act section 123ZI (<https://sso.agc.gov.sg/Acts-Supp/4-2017/Published/20170216?DocDate=20170216#legis>)를 참조해 주십시오.

**제 7 조 (산출기관의 의무 등)**

- 산출업무 중지, 중단 시 의견수렴의무

법률안 제 7 조 제 4 항에 의하면,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해당 지표의 산출업무를 중지, 중단하려는 경우 법률안 제 6 조 제 1 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는 법률안 제 6 조 제 1 항 단서에서 정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의견수렴의무가 면제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제 8 조 (중요지표 사용)**

- 중요지표 설명서 교부 및 설명의무

저희는 법률안 제 8 조의 입법 취지는 중요지표 사용기관이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규제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법률안 제 8 조 제 1 항은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한 금융거래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법률안 제 8 조 제 1 항의 “금융거래의 상대방”은 명시적으로 “금융소비자”에 한정될 것을 요청 드립니다. 또한, 위와 같은 “금융소비자”의 정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 9 조 제 5 항의 “전문투자자”는 제외될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전문투자자에 대해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등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면제되며<sup>11</sup>, 법률안 제 8 조 제 1 항의 설명의무의 대상 범위가 자본시장법상의 설명의무의 대상 범위와 일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법률안 제 8 조 제 1 항의 “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금융회사등”은 포함되지 않을 것을 요청 드리고, 계열회사 간의 거래 (동일 그룹 내 해외 법인 또는 지점, 본점과의 거래 포함) 또한 동 규정의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법률안 제 2 조의 명확한 정의에 관한 요청 또한 참조 부탁드립니다.

- 비상계획 마련의무

저희는 법률안 제 8 조 제 2 항의 비상계획의 마련 취지는 기준지표가 더 이상 산출되지 않을 경우 사용기관이 취할 행동에 대한 명확성과 계약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에 있는 것이지,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소비자인 거래상대방의 경우 다른 법률, 예를 들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민법의 손해배상 조항

<sup>11</sup> 자본시장법 제 47 조를 참조해 주십시오.



등에 의해 보호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법률안 제 8 조 제 2 항의 “금융거래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이라는 문구는 삭제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한편, 법률안 제 8 조 제 2 항은 중요지표 사용기관이 “중요지표가 산출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해당 부분을 “중요지표 산출이 중지 또는 중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일시적인 중단(disruption)은 제외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귀 위원회에서도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업계는 저희 ISDA 를 비롯하여 유럽 벤치마크법 제 28(2)조에 따라 기준지표 산출 중단 시 이를 대체할 기준지표를 확정하기 위한 계약 문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귀 위원회에서 법률안 제 8 조 제 2 항의 비상계획에서 정해야 할 내용과 요구되는 세부적 사항을 명확히 해 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 **제 15 조 (벌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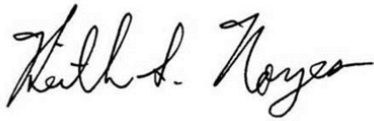
법률안 제 15 조 제 2 항은 법률안 제 7 조 제 5 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보관, 관리하지 않은 자는 1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료보관, 관리의무에 위반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징역형까지 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생각하며, 벌금형만이 가능하도록 규정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 **시행령 발표 시기**


법률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상당 부분이 대통령령에 의해 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회원기관들은 위와 같은 하위 법령이 되도록 빨리 일반에 소통되어 그 요건들에 대한 준비를 마칠 수 있게 될 것을 건의 드립니다.

저희는 귀 위원회와 앞으로도 논의를 지속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여기에 제출된 의견에  
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Keith Noyes, Regional Director, Asia Pacific ([knoyes@isda.org](mailto:knoyes@isda.org),  
+ 852 2200 5909), 한혜린 변호사, Assistant Director, Public Policy, Asia Pacific ([hhan@isda.org](mailto:hhan@isda.org),  
+ 852 2200 5903)에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Keith Noyes  
Regional Director, Asia-Pacific  
ISDA



Mark Austen  
Chief Executive Officer  
ASIFMA